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3.

발 의 자 : 진선미 · 이건태 · 김한규
박정현 · 박상혁 · 문진석
박은정 · 이용우 · 김우영
양문석 · 문대림 · 최혁진
장철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,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,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,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,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

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 신설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3(영유아의 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운영 현황, 선행학습(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) 실시 및 선행학습비용(선행학습 실시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)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3(영유아의 교육 등) ①</u>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</u> <u>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</u> <u>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</u> <u>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</u> <u>·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</u> <u>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</u> <u>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</u> <u>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</u> <u>정책의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</u> <u>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교육</u> <u>및 특별활동 운영 현황, 선행학</u> <u>습(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</u> <u>아니하게 제29조제2항에 따른</u> <u>표준보육과정에 앞서서 하는</u> <u>학습을 말한다) 실시 및 선행</u> <u>학습비용(선행학습 실시와 관</u> <u>련하여 보호자가 지출하는 비</u> <u>용을 말한다) 지출 현황 등에</u> <u>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</u>

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